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1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김도읍・구자근・강승규

신동욱 • 조지연 • 유용원

권영세 · 김성원 · 정점식

장동혁 • 유상범 • 김석기

김미애 • 곽규택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정한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어,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약물운전 근절에 있어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진 만큼 과로한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6호 중 "제45조"를 "제45조·제45조의2"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제45조"를 "제45조, 제45조의2"로 한다.

제45조 중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질병"으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약물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밖에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제1항 중 "제45조까지의 규정을"을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 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4조 및 제45조"를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로 한다. 제82조제2항제3호가목 중 "제45조"를 "제45조, 제45조의2"로 한다. 제93조제1항제4호 중 "제45조"를 "제45조의2"로 한다.

제148조의2제4항 중 "제45조"를 "제45조의2"로, "3년"을 "5년"으로, "1 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	26
항제3호 • 제44조 • <u>제45조</u> • 제	제45조 •
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	제45조의2
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	
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	
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	
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	
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	
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 33. (생 략)	27. ~ 33. (현행과 같음)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	전 금지) ①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	
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	
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	
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u>제45조</u> , 제47조, 제93조제1항제	제45조, 제45조의2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	
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⑤ (생 략)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 기기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 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u>.</u>				
② ~ ⑤ (현	행고	} 같·	음)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경	전 금
지)				
			-질병	
레 4트코 취임/소난묘		•	7 -1\	到 口

제45조의2(약물 운전 금지) 자동 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 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 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정상적 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 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 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 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 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 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 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생 ⁷ 략)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u>제45조까지 및 제45조의2를</u> -
 .
②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
· ③ (현행과 같음)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현
행과 같음)

되다

② 고용주	등은	제43조	스부터	<u>제4</u>
5조까지의	규정	에 따	라 운	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기	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	전차를	순
전하는 것	을 알	고도	말리지	아
니하거나	그러	한 윤	<u></u> 건자	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	전차를	순
전하도록	시켜시]는 아	·니 된	다.

-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지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 1. ·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 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② <u>제45조</u>
<u>까지 및 제45조의2</u>
세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현행과 같음)
2
1.•2. (현행과 같음)
3

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u>제45조</u> 또는 제4 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 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 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 우

나. (생 략)

4. ~ 9. (생략)

③ (생략)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u>제45조, 제45조의2</u>
나. (현행과 같음)
4.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 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 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 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 다.

- 1. ~ 3. (생략)
- 4. <u>제45조</u>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 5. ~ 20. (생략)
- ② ~ ④ (생 략)

제148조의2(벌칙) ① ~ ③ (생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5조의2
5.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네148조의2(벌칙) ① ~ ③ (현행